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2754 물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 1. 심재구 (480903-00000000), 전 0000 대표
주거 00 00 0000000000 00(000)
등록기준지 00 00 000 000-00

2. 0000 0000(변경 전 상호 0000 0000)
소재지 00 00 00000000 00 (000)
대표이사 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범무법인 O(피고인 심재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000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단50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판상형 열교환기, 저비점 분리기, 유량조정시설에서 각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 시료채취 결과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에서 고농도의 폐수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심재구가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을 통하여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폐수가 유입되는 예열기와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를 스팀 응축수 배관과 냉각수 배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저비점 분리기를 위 냉각수 배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유량조절시설을 스팀 응축수 배관에 각각 연결하는 방법으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른바 비밀배관이 설치되었거나 위 각 배관들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는 비밀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심재구가 2018. 2. 6.과 2018. 3. 8.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

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000이 피고인 심재구와 인척관계에 있어 피고인 심재구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000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0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여기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그런데 000의 진술에 의하면 000의 어머니와 피고인 심재구의 배우자는 4촌 관계라는 것으로 000과 피고인 심재구는 5촌 인척이 되므로(공판기록 제769쪽), 피고인 심재구는 000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000은 피고인 심재구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

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000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심재구가 000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000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000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세창 _____

 판사 권혁재 _____

 판사 심용비 _____